

2019. 6.10.~ 6.28./19일간

제30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심사결과

의안명	심사결과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2018 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2018 회계연도 장성군 기금 결산 승인안	원안가결

주요 내용

1.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6. 4.
- 제안자 : 이태신 의원
- 제안이유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라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적용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기능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회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5. 31.
- 제안자 : 장성군수(안전건설과)
-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

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4조)
-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추가(안 제4조의2)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4조제1항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
-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추가(안 제4조의3)
 - 원인 제공자는 장성군수가 추가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음
 -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 청구 가능
-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안 부칙 제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5. 31.

■ **제안자** : 장성군수(일자리경제과)

■ **제안이유**

- 지역 유동자금 역외 유출 억제를 통한 관내 상권 보호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장성사랑상품권 이용에 따른 건전한 상가 발전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 상품권 발행과 사용대상, 제한(안 제4조 및 제5조)
 - 상품권 발행 권면 종류와 사용대상, 사용제한 규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사업자 및 대규모 점포 등

- 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안 제6조, 제7조, 제8조)
 - 가맹점 지정 및 해지, 계약기간 등 규정
 - 가맹점의 행위제한 등 준수사항 등 규정
 - 가맹점의 대한 직권 취소 근거 규정
- 판매대행점 협약 및 환전(안 제9조, 제10조)
 - 판매대행점의 주의 의무 및 업무 책임 규정
 - 상품권 판매, 회수, 환전 등 실적 제출 규정
 - 자료 관리와 담당공무원의 관리 감독 범위 규정
- 사용자 준수사항(안 제12조)
 - 상품권 사용 범위, 방법, 관리, 보관 등 준수사항 규정
- 상품권 운영에 따른 대금 지급(안 제14조)
 -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에 따른 수수료 규정
- 상품권 할인한도 및 구매한도(안 제15조)
 -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 범위 내에서 할인과 명절전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 개인 구매한도 월 50만원 및 연간 600만원 초과 제한 규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6. 4.
- **제안자** : 이태신 의원
- **제안이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6조)
- 위원의 의무, 임기, 대우, 해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감독, 보험, 운영세칙 등 보칙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6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5. 31.

■ **제안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9. 7. 1.시행)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하여,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장성군 조례 7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안 제1조)

-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안 제2조)

-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안 제3조)

-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안 제4조)

- 3급 이상인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마. 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 제8조(안 제5조)

- 중증장애인(1, 2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확대

바.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안 제6조)

-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인 4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

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

사.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안 제7조)

-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5. 31.

■ **제안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제안이유**

- 우리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에게 수여되는 군민의 상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군민의 상」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분상과 장려상 구분 폐지(안 제3조)

- 공적심사 탈락 시 동일부문 2년 이내 재추천 금지 조항 신설(안 제4조)

-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심사위원회 위원장 변경 : (현행) 군수 → (개정) 부군수

- 심사위원회 구성

· (개정) 군 의회 의원 3명 이내, 각 분야별 전문인사 9명 이내

- 이종 수상 금지 조항 신설(안 제12조)

■ **의결결과 : 수정가결**

- 제7조(군민의 상 심사)에 ②항 13명을 15명으로 ③항 1호 3명을 5명으로 수정가결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군민의 상 심사)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1. 군의회 의원 3명 이내</p>	<p>제7조(군민의 상 심사)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1. 군의회 의원 5명 이내</p>

7.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5. 31.

▪ 제안자 : 장성군수(환경위생과장)

▪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가축의 용어 정의 및 사육동물 범위 확대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에 반영코자 함.

▪ 주요내용

- 가축의 사육동물 범위 확대

- 용어의 정의 지정

-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 전부제한지역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일부제한지역

· 돼지 : 500m 이내 ⇒ 1,000미터 이내

· 닭, 오리, 개, 메추리 : 500m 이내 ⇒ 700미터 이내

· 소·말·젓소·사슴·양·산양·염소 : 100m 이내 ⇒ 200미터 이내

-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해제·변경절차 신설
-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축종변경 신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8.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5. 31.**

▪ **제안자 : 장성군수(환경위생과장)**

▪ **제안이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법률명 변경에 따른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및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참여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의 법률명 변경으로 조례 정의 개정
- 용어의 정의 신설 :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주소
- 야생동물 등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 발생시 치료비 등 피해보상 신설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및 경비, 포상금 지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9. 장성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5. 31.**

▪ **제안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안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범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모범납세자 :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
 - 우수납세자 :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지방세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개인·단체는 연간 2백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
- 대상자 선정(안 제4조)
 - 모범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우수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 선정
- 우대 및 지원(안 제6조)
 -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신 및 수신
- 금리우대, 송금 및 환전 수수료 등 지원
 - 법인인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 군 홈페이지 등에 우수납세자로 명단 공개 등 자긍심 고취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0.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5. 31.
- 제안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안이유
 - 2019. 7. 1.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중/경증)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안 제2조)
 - 가. 종전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지속(안 제2조제1항)
 - 당초 :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변경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또는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감면기한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안 제2조제1항, 부칙3조)
 -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19.7.1.)부터 3년간으로 설정
 - 경과규정 : 일몰이후에도 종전 감면 대상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지속
 - 다. 기타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2항 / 제2조제3항 삭제)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일몰법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6조)
 - 일몰법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8조)
 - 일몰법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10조)
 - 일몰법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제출일자 : 2019. 5. 3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내 용

1) 일반회계

○ 세 입

- 예 산 액 : 433,376백만원
- 징수결정액 : 538,733백만원
- 수 납 액 : 534,349백만원
- 미 수납액 : 4,1537백만원

○ 세 출

- 예 산 액 : 433,376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 : 96,779백만원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792백만원
- 전 용 액 : 81백만원
- 이용 증감액 : -
- 이 체 액 : 3,823백만원
- 예 산 현 액 : 530,155백만원
- 지 출 액 : 386,260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08,134백만원
- 불 용 액 : 35,761백만원

2) 특별회계

○ 세 입

- 예 산 액 : 19,644백만원
- 징수결정액 : 25,442백만원
- 수 납 액 : 25,163백만원
- 미 수납액 : 279백만원

○ 세 출

- 예 산 액 : 19,664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 : 4,647백만원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
- 전용 증감액 : -
- 이용 증감액 : -
- 이 체 액 : -
- 예 산 현 액 : 24,291백만원
- 지 출 액 : 16,638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3,182백만원
- 불 용 액 : 4,470백만원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2.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제출일자 : 2019. 5. 3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내 용

○ 지출개요

- 지출결정액 : 792백만원
- 지 출 액 : 735백만원
- 불 용 액 : 57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

○ 지출내역

-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 지원금, 폭염 및 가뭄피해 농가 재난 지원금 등

▪ **의결결과 : 원안가결**

13. 2018 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안

- 제출일자 : 2019. 5. 31.
- 제 출 자 : 장성군수

▪ 내 용

○ 지출개요

- 조 성 액 : 8,330백만원(전년도까지 7,182, 당해연도 1,148)
- 지 출 액 : 1,063백만원
- 불 용 액 : 7,267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 7,267백만원

○ 지출내역

- 재해예방사업 379, 노인활용시설 지원 13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사업 525, 식품유통검사수거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

▪ 의결결과 : 원안가결